

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2. 7.(토) 조선일보, “외국인 근로자, 이직 제한 완화 추진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노사,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TF」를 통해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.
-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해서는,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나,
-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, TF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.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현 (044-202-7145)